

#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022학년도 후기 신·편입생 모집요강

원서 접수 마감: 2022. 8. 19(금)

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59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

홈 페이지 <https://www.berea.ac.kr>

문의 사항 02)831-2272

## [1] 모집과정 및 모집인원

- 소정의 요건을 갖춘 M.Div. 입학자는 입학일로부터 1년간 소정의 장학금(등록금 감면) 혜택 예정

과정	학 위	전 공	학 제	모집정원
석사	목회학석사 (M.Div.)	목회신학	풀타임: 3년(6학기) 파트타임: 6년(12학기)	00명
	일반신학석사 (M.T.S.)*	평신도신학	풀타임: 2년(4학기) 파트타임: 4년(8학기)	
	신학석사 (Th.M.)	구약학, 신약학, 조직신학, 교회사, 기독교교육학, 목회학, 선교학, 기독교상담학	2년(4학기)	
박사	신학박사 (Th.D.)	구약학, 신약학, 조직신학, 교회사, 기독교교육학, 선교학, 기독교상담학, 목회학, 실천신학	3년(6학기)	5명
	철학박사 (Ph.D.)			

\* 일반신학석사(M.T.S.): 평신도들에게 신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자 개설된 석사 학위 과정

## [2]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

과정	학 위	지원 자격	제출 서류
석사	목회학석사 (M.Div.)	- 4년제 대학졸업(예정)자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(2022.8.28. 이전) - 침례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소속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하는 자	- 입학원서, 사진 2매 - 신앙과 소명서, 면접자료 - 담임목회자 추천서(밀봉, 인비처리) - 대학졸업(예정) 및 성적 증명서 - 침례증서 사본(증명서) - 2년 내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표 제출시 서류전형 가산 * Th.M. 지원자 추가 제출 서류 - 학문연구계획서 - M.Div.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
	일반신학석사 (M.T.S.)		
	신학석사 (Th.M.)		
박사	신학박사 (Th.D.)	- M.Div.와 Th.M. 학위 소지(예정)자 - 성서신학전공 시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 고급 이상 수준구비 - 영어 필기/구두시험 합격자 - 침례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소속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하는 자	- 입학원서, 사진 2매 - 담임목회자 및 출신 대학원 지도 교수 추천서(밀봉, 인비처리) - 대학 및 신학대학 졸업(예정) 증명서 & 성적증명서 - 침례증서 사본(증명서) - 학문연구계획서 - 석사학위논문 2부 및 요약본 1부
	철학박사 (Ph.D.)		
외국인 제출 서류		- TOPIK 3급 이상 - 인가대학 확인서(해당국 대사관 발급) - 본인 및 재정보증인의 예금잔고 증명서(1개월 이상 계속 예치) -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, 재산세 과세증명서, 유학경비부담 서약서	

### [3] 전형일정 및 전형료

#### 1. 전형일정

구 분	일 시	비고
원서 접수	2022. 7. 4(월) ~ <b>8. 19(금) 17시</b> 마감	모든 서류 제출
면접 및 필기시험	<b>2022. 8. 22(월)</b>	정장, 필기도구
합격자 발표	2022. 8. 23(화)	개별 통보
합격자 등록	2022. 8. 23(화) ~ 25(목)	
신입생 O.T.	2022. 8. 23(화) 오후 17시 이후 예정	온라인 예정
신입생 수강신청	2022. 8. 23(화) ~ 25(목)	온라인

#### 2. 전형료

구 분	전형료
석사학위과정	50,000원
박사학위과정	100,000원

#### 3. 전형료 일부 반환

접수 완료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단,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반환합니다.

##### [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(입학전형료)]

- ②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
  2.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 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  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  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
- ③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·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